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6. 5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6. 5

다. 상 정 일 자 : 2006. 6. 15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기획감사실장 황해룡)

### 가.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06.2.8)으로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41,400천원 추가편성(당초 21,600천원 → 변경 63,000천원)
- 입법예고 : 2006. 5. 25 ~ 6. 1(7일간) ▷ 제출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 제2조(정의)에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참고로 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제1항제1호는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로, 제1항제2호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로, 콜론(:)을 없애고 주민이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